

의안번호	2217324
의 퇴 인	김한규의원
회 답 일	2026.6.17.
추계번호	26D128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제주과기원 설립준비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25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5,100만원(연평균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각종 계획 수립 (안 제210조의2 등)	228	—	—	114	—	342	68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운영(안 부칙 제2조)	4.5	4.5	—	—	—	9	2
합 계	232.5	4.5	—	114	—	351	70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5조의2 ~안 제165조의5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	-국가는 제주자치도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음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음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통행료 감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210조의2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보수하는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20조의4 ~안 제220조의10 (고등교육 및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	-국가는 제주자치도 내 대학과 지역 산업·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창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국가는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이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를 위하여 현장실습, 시험·실증·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제주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 거주 시설·생활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양성, 연구 개발·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34조의2, 안 제234조의7 ~안 제234조의10 (제주과기원에 대 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등)	-제주자치도를 거점으로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고 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이하 “제주과기원”이라 함)을 설립함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 교원, 연구원 등의 정주환경 조성 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가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비 총액 을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과기원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보조금)	의무규정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산학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제주과기원의 운영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56조의2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 며, 국가는 건립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66조의2 ~안 제266조의4 (문화산업진흥지 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제주자치도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의 신설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94조의4 (푸드테크산업 실 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94조의7 ~안 제294조의15 (농촌활력촉진특 구 지정 등)	-도지사는 농촌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도지사는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전문단지 등의 조성 에 필요한 입지 확보,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주자치도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296조의2 ~안 제296조의3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 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제주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도지사가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304조의2, 안 제304조의3, 안 제304조의8, 안 제304조의9, 안 제304조의11, 안 제304조의12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제주자치도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국가와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305조의2, 안 제305조의3, 안 제305조의4, 안 제305조의5, 안 제305조의6, 안 제305조의7, 안 제305조의8, 안 제305조의9, 안 제305조의10, 안 제305조의11, 안 제305조의13, 안 제305조의14, 안 제305조의15, 안 제305조의17, 안 제305조의18, 안 제305조의21, 안 제305조의23, 안 제305조의24, 안 제305조의25, 안 제305조의26, 안 제305조의27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등)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음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제주자치도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산업전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우주·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국방산업, 추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	--	--	------

-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국가는 제주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기본계획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센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 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 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12	안 제306조의2 ~안 제306조의5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에 관한 특례 등)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따른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보건의료 여건 개선, 광역 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하여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340조의2 ~안 제340조의6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등)	-도지사는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와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지역 여건·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376조의2 (물순환 촉진 및 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 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405조의2 (우수 인재를 위 한 주거 및 정착 지원)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고,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426조의5 (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물류비 지원,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426조의6 ~안 제426조의7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점가 활성화 지원, 청년상인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정부와 도지사는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427조의4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자 재 정지원 특례)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439조의3 (지방관리항만 지 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이 지역균형발 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거나 해 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부칙 제2조 (설립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제 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과기 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함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5조의2 ~안 제165조의5 (투자기업에 대한 지 원 특례 등)	×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증설 등에 대한 토 지·공장의 매입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지원을 규정함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 생할 수 있으나,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 등을 별도로 정 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기 곤란함
2	안 제210조의2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수립)
3	안 제220조의4 ~안 제220조의10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 무 등)	×	○개정안에서 정하는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성 화대학 지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 지원, 산 학협력 선도지구 조성·운영 지원 등은 현 시점에서 지 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없어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

- 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
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4	안 제234조의2, 안 제234조의7 ~안 제234조의10 (제주과기원에 대한 제 주자치도의 지원 등)	×	○ 개정안은 제주과기원 설치·운영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산학협력기금 운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기 곤란함 ○ 또한, 개정안은 제주과기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지급 여부, 출연금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기 곤란함
5	안 제256조의2(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6	안 제266조의2 ~안 제266조의4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	○ 개정안은 도지사의 문화산업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등을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294조의4 (푸드테크산업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미대상: —현행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¹⁾」은 정부의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²⁾」는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제주자치도는 2026년 「제주 식품 제조·가공산업 구조 분석 및 정책 활용 기반 연구」(소요예산 5백만원)를 추진 중임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 중인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294조의7 ~안 제294조의15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등)	×	○ 개정안이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촌활력촉진특구,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등의 지정 여부·지원 규모,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등의 조성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9	안 제296조의2 ~안 제296조의3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304조의2, 안 제304조의3, 안 제304조의8, 안 제304조의9, 안 제304조의11, 안 제304조의12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1	안 제305조의2 ~안 제305조의11, 안 제305조의13 ~안 제305조의15, 안 제305조의17, 안 제305조의18, 안 제305조의21, 안 제305조의23 ~안 제305조의27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등)	0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수립)
		×	○개정안에 따른 지원 특례 사항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제주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의 시설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 수행·지원 및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관련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제주자치도 내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 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에 대한 국가의 통합적 지원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 특례 등에 대하여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2	안 제306조의2 ~안 제306조의5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에 관한 특례 등)	×	○ 개정안은 국가의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 및 운영 비용 지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3	안 제340조의2 ~안 제340조의6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등)	×	○ 개정안은 기본사회 관련 정책 시행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화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주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4	안 제376조의2 (물순환 촉진 및 지원)	×	○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하는 경비와 그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렵고 관련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5	안 제405조의2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공급, 임대주택 임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및 별도로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6	안 제426조의5 (국토외곽 면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	(국토외곽 면섬 종합발전 계획 수립)
17	안 제426조의6 ~안 제426조의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8	안 제427조의4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대한 재정지원, 자금의 보조·융자 등에 대하여 도조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9	안 제439조의3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	○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의 대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0	안 부칙 제2조 (설립준비)	○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종 기본계획 수립 및 제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안 제210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안 제305조의18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안 제426조의5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 안 제426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를 참고하여 추계함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2021)」 연구용역비 48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2022)」 연구용역비 62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23)」 연구용역비 49백만원의 평균액 53백만원을 2023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³⁾을 적용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계획별 수립주기는 다음과 같이 가정
 -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5년(개정안 근거)
 - －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3년(개정안 근거)
 -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 5년⁴⁾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3년⁵⁾
 - 위 수립주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과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은 2026년에 수립,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6년과 2029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3	2.1	2.3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주기 5년을 참고하여 가정함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주기 3년을 참고하여 가정함

-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 관련)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제주과기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부터 1년간 설립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외에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설립준비위원회 정원은 법 상 최대인 7명으로 하고, 이 중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민간위원을 5명으로 가정
 -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는 연간 6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6년에 3회, 2027년에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각종 계획 수립(안 제210조의2, 안 제305조의18, 안 제426조의5 및 안 제426조의6)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각종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금액을 적용함
 - 연구용역비 평균금액 5,300만원을 2023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6년 5,7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가정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과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은 추계기간 중 2026년에 각 1회 수립,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6년과 2029년에 각 1회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등 4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억 2,800만원 등 5년간 3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안 제210조의2)	57	-	-	-	-	57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안 제305조의18)	57	-	-	57	-	114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안 제426조의5)	57	-	-	-	-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426조의6)	57	-	-	57	-	114
합 계	228	-	-	114	-	3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운영(안 부칙 제2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수는 5명으로 하고, 회의 참석수당은 3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설립준비위원회는 1년간 운영하며, 회의는 1년간 6회 실시하고,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6년에 3회, 2027년에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50만원 등 총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당 지급 횟수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 (5명×연 3회)	15	15	-	-	-	30
회의참석수당(b)	0.3	0.3	-	-	-	0.3
계(a×b)	4.5	4.5	-	-	-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제주과기원 설립준비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25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5,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각종 계획 수립 (안 제210조의2 등)	228	-	-	114	-	342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운영(안 부칙 제2조)	4.5	4.5	-	-	-	9
합 계	232.5	4.5	-	114	-	3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